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기소·선고 사례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2023. 6.



대한상공회의소

KIM & CHANG

목 차

- I.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동향
- II.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기소 사례
- III.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선고 사례
- IV. 대응 방안

I.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동향

○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 입건/처리 현황 (2022. 12. 31. 기준)

- 고용노동청 기준 총 229건의 사고 중 52건의 사건(22.7%)을 처리.
총 18건의 사건을 내사종결하고 34건의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함

구분	발생	송치	기소	내사종결	수(내)사 중	사건처리율 (송치+내사종결)/발생
'22년(1.1~12.31)	229	34	11	18	177	22.7

- 기소송치 사건 업종: 제조업(16건), 건설업(14건), 기타업종(4건)

(단위: 건, %)

계	제조업		건설업		기타업종	
		비중		비중		비중
34	16	47.1	14	41.2	4	11.8

- 기소송치 사건 재해 유형: 떨어짐(12건), 끼임(8건), 물체에 맞음(5건), 깔림(2건), 부딪힘(2건) 등

(단위: 건, %)

계	떨어짐		끼임		물체에 맞음		깔림		부딪힘		직업성 질병		무너짐		폭발		베임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34	12	35.3	8	23.5	5	14.7	2	5.9	2	5.9	2	5.9	1	2.9	1	2.9	1	2.9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 입건/처리 현황 (2022. 12. 31. 기준)

- 기소송치 사건 주요 위반 조항: 시행령 제4조 제3호 28건, 동조 제5호 20건, 동조 제8호 17건

구분	계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시행령 제5조 제1호(의무이행여부 점검, 결과 청취)
		제1호 (안전보건목표, 경영방침 설정)	제2호 (안전보건총괄 전담조직)	제3호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업무절차)	제4호 (안전보건예산 편성)	제5호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에 대한 평가)	제6호 (안전보건전문인력 배치)	제7호 (종사자의견 청취 절차)	제8호 (비상대응 매뉴얼)	제9호 (도급, 용역, 위탁 시 조치)	
송치건수*	34	12	4	28	15	20	5	14	17	9	2
백분율(%)	-	35.3	11.8	82.4	44.1	58.8	14.7	41.2	50.0	26.5	5.9

* 하나의 사안에 대해 위반조항이 2개 이상 중복된 경우 존재

(’23.1.26. 고용노동부 주관 토론회 통계자료 발제·수정)

무혐의/내사 종결 사건

		이유
무혐의 사건	급성중독 사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할, 2022. 6. 27. 창원지검 무혐의)	안전보건 관리체제 구축 확인
내사 종결 건	아파트 경비원 사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할, 2022. 8. 17. 검찰 내사종결 지휘) 구청 분뇨수거 작업자 사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할, 2022. 7. 경 내사종결) 등	경영 책임자가 사고 위험을 미리 짐작하고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고 발생 과정이 이례적

중대재해처벌법위반 기소 사례 (2023.05. 기준)

구분	1.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 (창원지검)	2. 건설 공사업체 (대구지검 서부지청)	3. 조선소 선박수리 업체 (창원지검 통영지청)
사고 개요	트리카클로로메탄이 함유된 세척제를 사용하여 근로자 16명 급성중독(직업성 질병)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대 작업 중 추락(11m)	조선소 선박수리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업체 소속 근로자 추락(10m)
사건 진행	2022. 2. 10. 발생 2022. 6. 27. 기소 - 최초 기소 의견 송치 및 기소 사례(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진행 중)	2022. 3. 29. 발생 2022. 10. 19. 기소 - 사망사고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첫 기소 사례	2022. 2. 19. 발생 2022. 11. 3. 기소 - CSO가 있는 경우에도 대표이사를 기소한 첫 사례
피고인 >>	경영책임자(대표이사)	원청 경영책임자(대표이사)	원청 경영책임자(대표이사)
적용 조항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업무절차 마련(시행령 제4조 제3호) 등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시행령 제4조 제5호)	- 안전보건 경영방침 마련(시행령 제4조 제1호)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업무절차 마련(시행령 제4조 제3호)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시행령 제4조 제5호) - 하도급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조치 준수 여부 판단기준과 절차 마련(시행령 제4조 제9호)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시행령 제4조 제5호) - 종사자 의견 청취, 개선방안 마련(시행령 제4조 제7호) - 하도급업자 안전보건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마련(시행령 제4조 제9호)

중대재해처벌법위반 기소 사례 (2023.05. 기준)

구분	4. 철강제조 업체 (창원지검 마산지청) ✓	5. 건설공사업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6. 건설공사업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
사고 개요	철강제조 공장에서 크레인에서 떨어진 방열판(1.2톤)에 부딪힘	상가 신축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크레인에서 떨어진 철근(약 190kg)에 맞아 사망	요양병원 증축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추락하여 사망(16.5m)
사건 진행	2022. 3. 16. 발생 2022. 11. 3. 기소	2022. 3. 9. 발생 2022. 11. 30. 기소	2022. 5. 14. 발생 2022. 11. 30. 기소
피고인 >>	원청 경영책임자(대표이사)	원청 경영책임자(대표이사)	원청 경영책임자(대표이사)
적용 조항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시행령 제4조 제5호) - 하도급업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마련(시행령 제4조 제9호)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마련(시행령 제4조 제3호)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평가 기준 마련(시행령 제4조 제5호) - 하도급업체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마련(시행령 제4조 제9호)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업무절차 마련(시행령 제4조 제3호)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평가 기준 마련(시행령 제4조 제5호) - 중대산업재해를 대응 비상 매뉴얼 마련(시행령 제4조 제8호)



중대재해처벌법위반 기소 사례 (2023.05. 기준)

구분	7. 자동차 부품업체 (울산지검)	8. 건설 공사업체 (춘천지검)	9. 건설공사업체 (인천지검)
사고 개요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에서 소속 근로자가 다이캐스팅 기계에 머리가 협착되어 사망	춘천교육지원청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이동식 비계 위에서 추락하여 사망 (약 2m)	근린생활시설 건설 현장에서 거푸집이 무너지면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철제 파이프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
사건 진행	2022. 7. 14. 발생 2022. 12. 27. 기소	2022. 2. 26. 발생 2022. 12. 29. 기소	2022. 3. 16. 발생 2022. 12. 29. 기소
피고인 >>	경영책임자(대표이사)	경영책임자(대표이사)	원청 경영책임자(대표이사)
적용 조항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업무절차 마련(시행령 제4조 제3호)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시행령 제4조 제5호) 등 - 중대산업재해 대응 비상 매뉴얼 마련(시행령 제4조 제8호) -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 이행 반기 1회 점검 및 조치(법 제4조 제1항 제4호)	- 안전보건 경영방침 마련(시행령 제4조 제1호)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시행령 제4조 제5호) -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시행령 제4조 제7호) - 중대재해 발생 또는 급박한 위험 대비 비상 매뉴얼 마련(시행령 제4조 제8호) 등	- 안전보건 경영방침 마련(시행령 제4조 제1호)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업무절차 마련(시행령 제4조 제3호) -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시행령 제4조 제4호)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시행령 제4조 제5호) - 종사자 의견 청취, 개선 방안 마련(시행령 제4조 제7호) - 중대산업재해 대응 비상 매뉴얼 마련(시행령 제4조 제8호)



중대재해처벌법위반 기소 사례 (2023.05. 기준)

구분	10. 건설공사업체 (창원지검 마산지청)	11. 건설공사업체 (제주지검)	12. 자동차 부품업체 (대구지검 서부지청)
사고 개요	수도시설 공사현장에서 굴착기와 벽면 사이에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의 머리가 협착되어 사망	제주대학교 생활관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대표가 콘크리트 구조물에 매몰되어 사망	공장에서 압축성형기에서 튕겨나온 플라스틱 공구(‘지그’)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
사건 진행	2022. 5. 19. 발생 2022. 12. 29. 기소	2022. 2. 23. 발생 2022. 12. 30. 기소	2022. 2. 9. 발생 2023. 2. 14. 기소
피고인	원청 경영책임자(대표이사)	원청 경영책임자(대표이사)	원청 경영책임자(대표이사)
적용 조항	- 안전보건 경영방침 마련(시행령 제4조 제1호)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구비 등 필요 예산 편성(시행령 제4조 제4호)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시행령 제4조 제5호) - 중대산업재해 대응 비상매뉴얼 마련(시행령 제4조 제8호)	- 안전보건 경영방침 마련(시행령 제4조 제1호)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업무절차 마련(시행령 제4조 제3호)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시행령 제4조 제5호) -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시행령 제4조 제7호) - 중대재해 발생 또는 급박한 위험 대비 매뉴얼 마련(시행령 제4조 제8호)	- 안전보건 전담조직 설치(시행령 제4조 제2호)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업무절차 마련(시행령 제4조 제3호) - 법정 인원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배치(시행령 제4조 제6호)

중대재해처벌법위반 기소 사례 (2023.05. 기준)

구분	13. 건설공사업체 (대구지검 서부지청)	14. 골재채취업체 (의정부지검)	15.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체 (울산지검)
사고 개요	급수구역확장 사업 공사장에서 후진하는 하청업체 근로자가 후진하는 굴착기에 깔려 사망	양주시 소재 채석장에서 골재채취 작업 중 대규모 토사 붕괴로 근로자 3명이 매몰되어 사망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 사건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 공장에서 사출 성형기 내부로 머리를 넣어 작업하던 중 금형 사이에 머리가 끼어 사망
사건 진행	2022. 6. 8. 발생 2023. 3. 17. 기소	2022. 1. 29. 발생 2023. 3. 31. 기소	2022. 5. 27. 발생 2023. 5. 8. 기소
피고인	원청 경영책임자(대표이사)	그룹 회장 (사고 발생 회사 모기업의 대주주)	경영책임자(대표이사)
적용 조항	- 안전보건 전담조직 설치(시행령 제4조 제2호)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업무절차 마련(시행령 제4조 제3호) 등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업무절차 마련(시행령 제4조 제3호) - 중대재해 발생 또는 급박한 위험 대비 매뉴얼 마련(시행령 제4조 제8호)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시행령 제4조 제5호) -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시행령 제4조 제7호) 등

중대재해처벌법위반 기소 사례 (2023.05. 기준)

구분	16. 건설공사업체 (부산지검)
사고 개요	업무시설 신축공사현장 주차타워에서 근로자가 단열작업 점검을 하던 중 리프트 무게추에 끼어 사망
사건 진행	2022.3.25. 발생 2023.5.8. 기소
피고인 >>	원청 경영책임자(대표이사)
적용 조항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업무절차 마련(시행령 제4조 제3호) -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시행령 제4조 제7호) - 하도급업체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마련(시행령 제4조 제9호)



II.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기소 사례



‘경영책임자’ 판단 (실무상 경향)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원칙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또는

‘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현재까지 수사기관은
이른바 ‘CSO’를 거의 인정하지 않는 경향



각자 대표이사이면서 사업을 총괄하는 CSO인
경우에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될 가능성

실질적으로 회사의 사업을 총괄하여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인을 넘어서 대주주(회장, 오너)에게 경영책임자 확대 가능

檢, ‘중대재해법 위반 1호’ 00그룹 회장 기소

조선비즈 보도

검찰은 A 회장이 ▲채석산업에 30년간 종사한 전문가인 점 ▲사고현장의 위험성을 사전에 인식한 점 ▲안전보건업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보고받고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결정권을 행사한 점 ▲그룹 핵심사업인 골재 채취 관련 주요사항을 결정해온 점을 들어 경영책임자가 맞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경영책임자 판단 기준 (경영책임자 확대 관련)

판단기준	해당여부
의사결정 구조	회사 상호간 유기적 결합 구조 관계(수직계열화)로서 통일된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는 경우 
구체적 지시	계열사 회의 등을 통해 주요 현안을 보고 받고 구체적 지시를 하는 경우 
	회사의 안전보건, 생산관리, 인사, 재무 등에 관한 주요 현안을 보고 받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경우 
	중대재해 등 사고 발생 시 보고를 받고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는 경우 
최종적인 의사결정	특정 임원이 여러 계열사 임원을 겸직하도록 지시하는 등 인사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대표이사, CSO 등이 임명되어 있더라도,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권이 없는 경우 

검찰이 구체적인 경영책임자 판단 기준을 밝힘

대주주(회장, 오너)가 있는 기업의 경우 유족이나 시민단체 등에서 대주주(회장, 오너)를 **고소, 고발하여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 농후**

경영책임자 판단에 있어서 안전 관련 조치를 불리한 요소로 판단한 것은 **실무상, 법리상 불합리**

-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에 비추어 안전 관련 조치는 주체가 누구든지 관계 없이 장려되어야 하고 불리하게 평가되어서는 아니됨
- 경영책임자로 평가받지 않기 위해서는 안전에 관해 보고도 받지 않고 지시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 초래
- 과거 파견 여부 판단시 원청의 안전 관련 조치를 파견 판단의 불리한 요소로 보았던 적이 있었는데, 장려되어야 할 안전조치를 불리하게 판단하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

III.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선고 사례

중대재해 1호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4. 6. 선고 2022고단3254 판결)

2022. 5. 14. 사고 발생



원청회사

도급



수급회사



-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원청)는 'OO요양병원 증축공사' 도급받음
- 해당 공사 중 철골 및 플레이트 공사를 수급인에게 하도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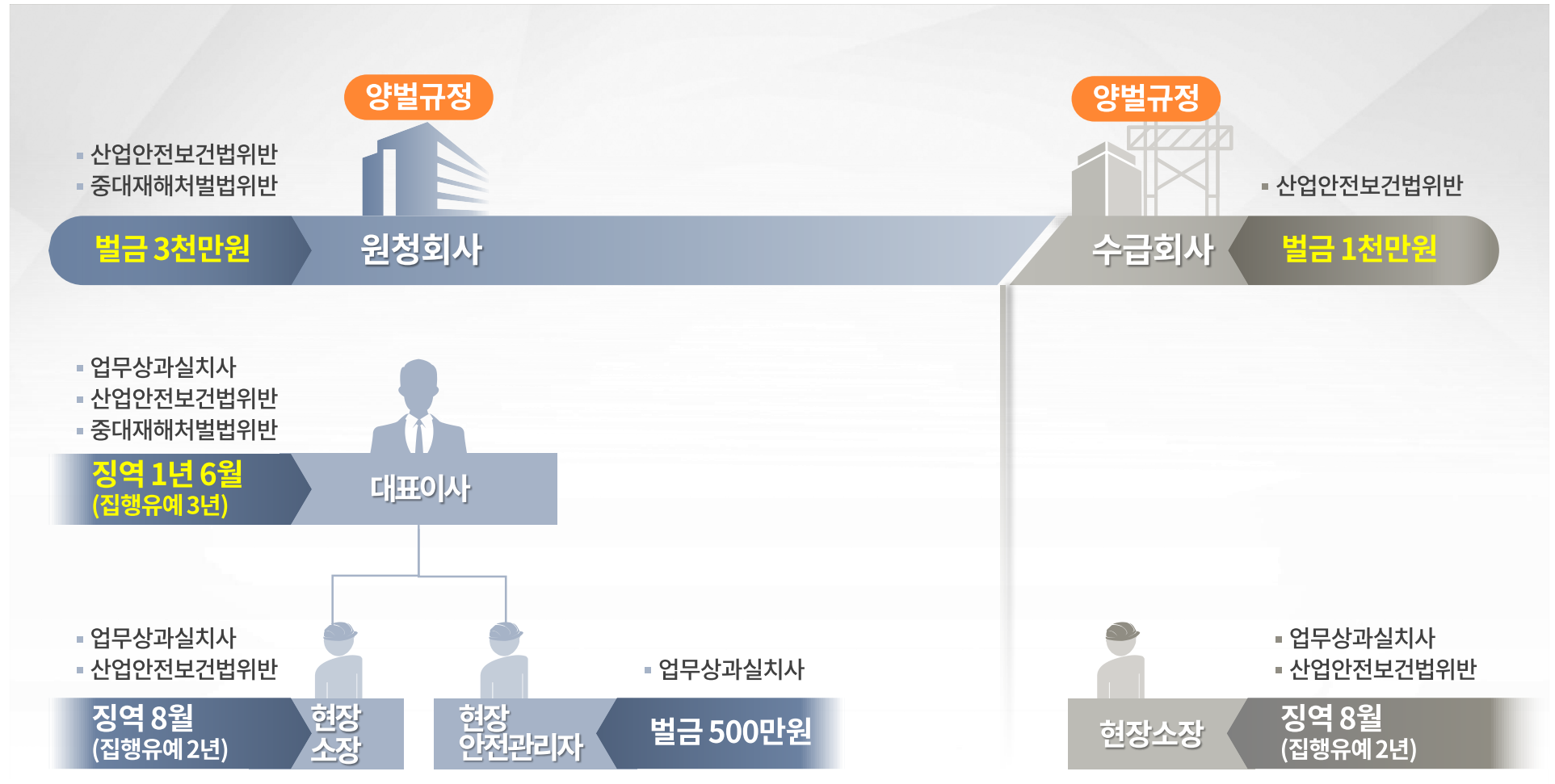
수급인 소속 근로자는

2022. 5. 14. 병원 건물 5층 개구부에서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상단 봉이 해체된 안전난간 위로 고정앵글
설치 작업을 하던 중
16.5m 아래로 추락 사망

2022. 11. 30. 기소

2023. 4. 6. 1심 판결 선고 (항소 미제기로 확정)

중대재해 1호 판결 - 피고인 및 선고형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책임자가 이행하여야 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중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조항



- ①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업무절차 마련 (동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 (동법 시행령 제4조 제5호 나목)
- ③ 비상 대응 매뉴얼 마련 (동법 시행령 제4조 제8호)

▶ 위 각 조항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은 것으로 보임

죄수 관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상상적 경합 관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 산업안전보건법위반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을 상상적 경합 관계로 판단
(형이 더 무거운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유리한 양형 요소

재해자의 불안정한 행위

건설근로자 사이에서 만연하여있던 안전난간의 임의적 철거 등의 관행

합의 및 처벌불원

피해자의 유가족들에게 진정어린 사과
유가족들과 합의하여 유가족들이 처벌 불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재발 방지를 굳게 다짐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제시

동종 전과 없음

범죄전력이 전혀 없거나 이 사건과는 다른 종류의
범죄전력(벌금형)

불리한 양형 요소

법 제정 배경

사업주 및 도급인에 대해 보다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의무 위반

결과(사망) 발생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의무 이행의 전적인 결여

업무상 의무 중 일부만을 이행하였더라도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

도급인(원청) 대표이사에게 사건 관련자 중 가장 무거운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선고

기소



도급인(원청) 대표이사

합의, 자백, 근로자 부주의 관행 등 유리한 양형인자가 다수 있었음에도, 피고인 6인 중 도급인(원청) 대표이사에게 가장 무거운 형 선고 → 향후 양형에 대한 가늠자

적용조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제5호, 제8호

수급인(하청) 대표이사



불기소

수급인(하청) 대표이사는 기소되지 않음

중처법 적용 유예 대상

다단계적 인과관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순차적 인과관계

시행령
제4조 제3호, 제5호 위반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
수립 누락



안전대지급 및 부착
설비 설치 누락

시행령 제4조 제8호 위반



추락위험 제거 조치 또는 작업중지 미이행

사고
발생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음

중대재해 2호 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4. 26. 선고 2022고합95 판결)

2022. 3. 16. 사고 발생



원청회사

도급



수급회사



- 2022. 3. 16. 철강제조 공장에서 도급인(원청) 회사로부터 방열판 보수 작업을 도급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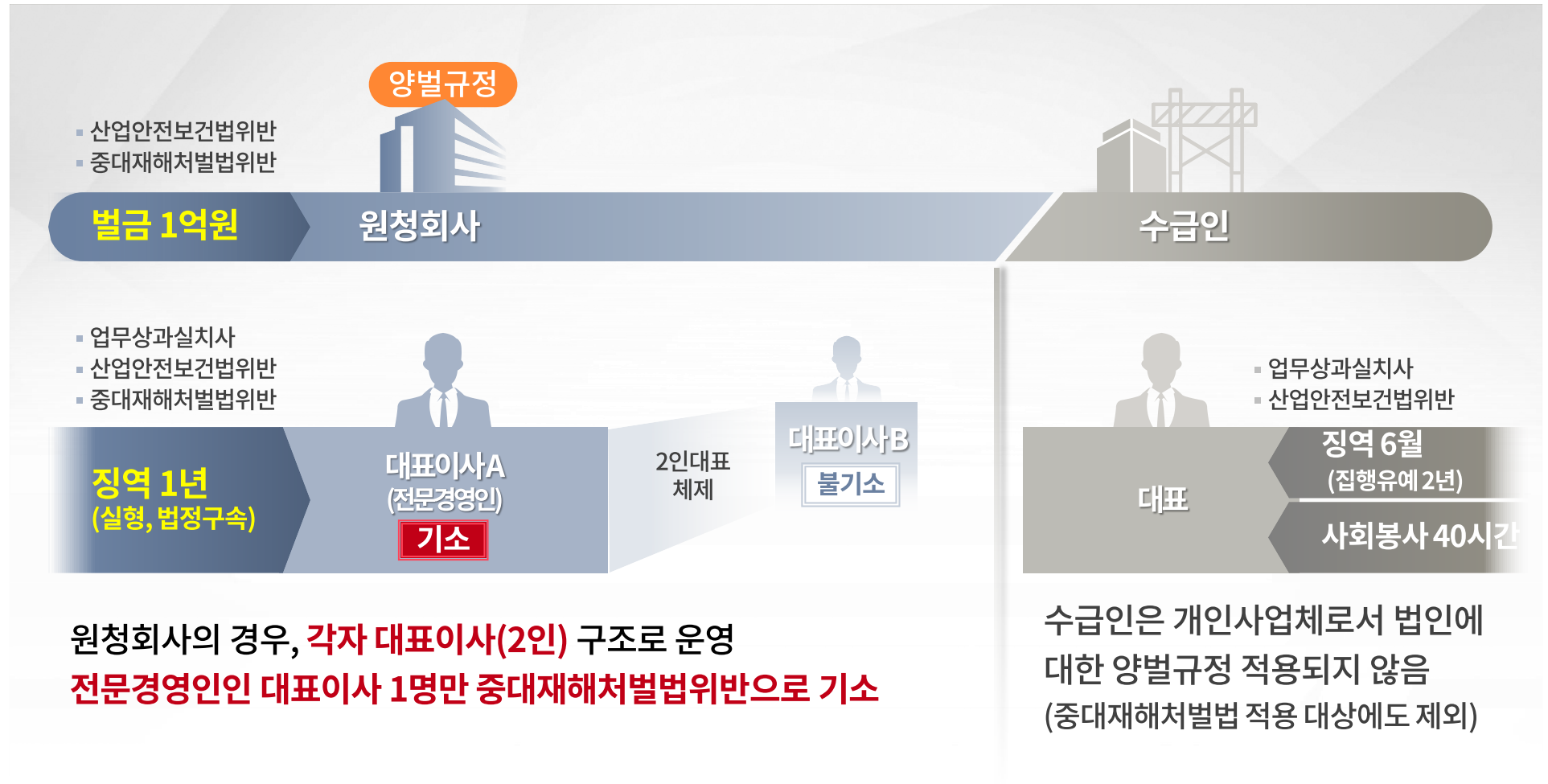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 작성하지 아니하고
감독자도 없는 상태에서

수급인(하청) 소속 근로자가 작업 중
크레인으로 들어올리고 있던 방열판(무게
1.2톤)이 낙하되어 방열판과 협착 사망

2022. 11. 3. 기소

2023. 4. 26. 1심 판결 선고 (항소 제기)

중대재해 2호 판결 - 피고인 및 선고형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책임자가 이행하여야 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중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조항



-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
(동법 시행령 제4조 제5호 나목)
- ② 협력업체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 마련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 위 각 조항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은 것으로 보임

유리한 양형 요소

범행 자백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

피해자의 과실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확대에 과실 존재

유족과 합의 및 처벌불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

시정명령 등 이행

이 사건 사고 이후 당국의 시정명령을 모두 이행하고 과태료를 자진 납부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사항 시정

위반사항으로 지적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도급/용역/위탁업체에 대한 안전보건 평가기준을 마련

불리한 양형 요소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배경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목적과 제정 경위를 고려

다수의 동종 전력

- 이 사건 사고 이전 다수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적발 및 산업재해 사망사고 전력
→ 사업장에 종사자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 존재
- 종전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형사재판을 받는 중 사고 발생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유예기간 중에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다른 사업장에 비해 컸던 점

2010.6.9	안전조치의무 위반 적발 (합동점검)	벌금형
2020.12.21.	안전조치의무 위반 적발 (사고 예방 감독)	벌금형
2021.5.24.	사망사고: 1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향소심 벌금 1천만원 (2023.2.17. 확정)
2021.5.27.	안전조치의무 위반 적발 (사고 후 점검)	벌금형
이 사건 2022.3.16.	사고(중대재해) 발생	
2022.6.9.	안전조치의무 위반 적발 (사고 후 점검)	

도급인(원청)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실형) 선고

실형



도급인(원청) 대표이사

사고 이력 및 산안법 준수 여부가 주요한 양형 요소로 고려됨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의 산업재해, 안전조치 위반 등 산안법 준수 여부도 양형에 있어 주요한 요소로 고려

죄수 및 인과관계

- ‘1호 판결’의 입장을 유지(‘상상적 경합’ 및 ‘다단계적 인과관계’)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고 발생

시행령
제4조 제5호, 제9호 위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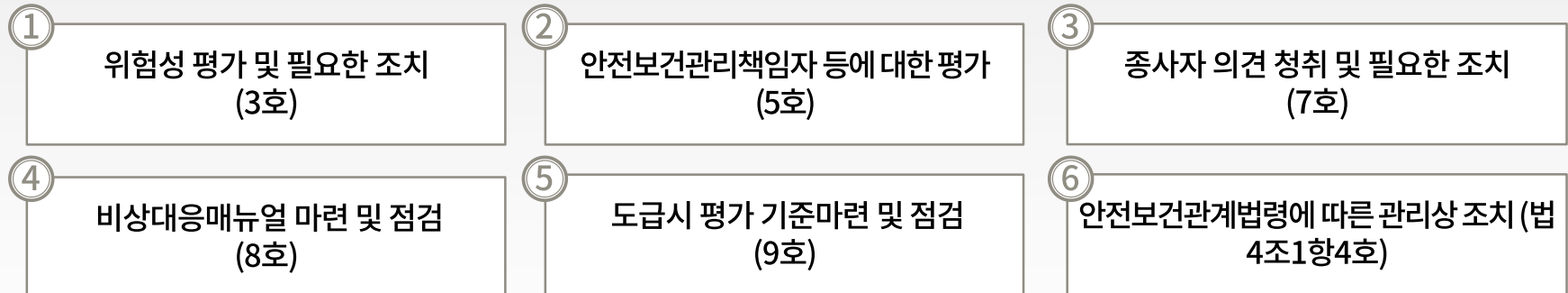
- 원청의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미작성
- 중량물 인양작업 관리
- 감독 부실

IV. 대응 방안



의무위반 관련 수사

- 시행령상 의무 위반 전체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제출받거나 압수수색하는 등으로 수사 진행
- 경영책임자의 반기1회 이상 점검 대상을 위주로 수사하는 한편, 중대재해 발생과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의무의 위반여부에 수사 집중



- 특히 위험성 평가 절차 마련과 관련해서는 사고 원인에 대한 위험성 평가가 있었는지, 없었다면 위험성 평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유는 무엇인지, 사고 관련 작업허가제도를 실시 중인지, 업무 관행, 관리 감독자의 역할 등에 대하여 상세히 조사
- 사고 원인과 관련된 위험성 평가가 미흡한 경우는 의무 위반으로 판단하는 경향



수사기관 관심사항 (Checkpoint)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업무절차 (시행령 제4조 제3호)

- 사고발생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가 누락된 경우
- 산안법상 수시 위험성평가가 실시되지 않은 경우
- 사고발생 작업에 대하여 위험성평가 절차 외에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할 수 있는 다른 절차가 마련되었는지
- 경영책임자에 의한 반기 점검 및 필요 조치가 적정하게 실시되었는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평가 (시행령 제4조 제5호)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가 모두 적법하게 선임되었는지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가 담당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는지
-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의 업무수행내역을 반기 1회 이상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지

대응방안 / 시사점

- 위험성평가 절차를 구비하고, 산안법에 따른 최초 / 정기 / 수시 위험성평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 위험성평가가 누락되는 작업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확인, 점검하고 이에 관한 기록을 보존
-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위험성평가가 실시될 수 있도록 관리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을 산안법 요건에 맞도록 각 선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산안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과 예산 부여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업무수행 내역을 정기적으로 확인,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하며, 이에 관한 기록을 보존



수사기관 관심사항 (Checkpoint)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시행령 제4조 제7호)

-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되었는지
- 종사자의 의견이 묵살된 경우 이에 대한 근거나 사유가 있는지
- 경영책임자에 의한 반기 점검 및 필요 조치가 적절하게 실시되었는지

비상 대응 매뉴얼 (시행령 제4조 제8호)

- 비상 대응 매뉴얼상 시행령 제4조 제8호 각목의 조치가 포함되었는지
- 사고가 발생한 상황이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로 포함되도록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는지
-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구호조치, 근로자 대피 등 해당 매뉴얼에 따른 후속조치가 실시되었는지
-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비상 대응 매뉴얼에 대한 교육 또는 훈련 등을 실시하였는지

대응방안 / 시사점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협의체를 통해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을 실질적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관리 및 회의록 등 관련 기록을 보존
- 개선방안 마련 및 이행의 기준을 마련하고, 종사자 의견에도 불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경우 합리적인 근거 필요
- 안전신문고, TBM 등 다른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
- 비상 대응 매뉴얼에 포함이 필요한 항목은 반드시 포함하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확인, 점검
- 비상 대응 매뉴얼을 종사자에게 교육하고 주기적으로 모의훈련 등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수사기관 관심사항 (Checkpoint)

도급, 용역, 위탁시 조치 (시행령 제4조 제9호)

- 협력업체 평가를 위한 내부 기준 및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 협력업체에 대한 평가 결과 기준 미흡으로 판단되는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지
- 신규 계약 체결 시뿐만 아니라 계약 갱신 또는 계약 중에도 협력업체 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하는지
- 협력업체 평가의 근거가 된 자료는 적정한지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 이행 점검 (법 제4조 제1항 제4호)

-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비추어 적용 가능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모두 점검하였는지
-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에 대한 점검 수행 방식 및 사고 발생 작업에 대한 점검이 누락된 경위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점검을 실시한 후 후속적인 필요 조치는 어떻게 실시하였는지

대응방안 / 시사점

- 협력업체 평가에 관한 내부 기준을 마련하고,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후속 조치 등에 관한 절차까지 마련 필요
- 신규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협력업체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협력업체 평가 실시에 관한 기록 보존

- 사업/사업장에 적용 가능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리스트업한 후 각 법령상의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필요
- 점검 시 누락되는 의무 이행 사항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확인, 점검하고 이에 관한 기록을 보존
- 점검 실시 후 후속적인 필요 조치에 대해서도 기록 보존 필요